

한국콜마(주) ESG위원회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ESG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기능 및 권한)

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 내에서 제9조에서 정하는 환경(Environmental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Governance)(이하 ‘ESG’라고 한다)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검토·결의·보고한다.

제2장 구성

제4조(위원)

- ① ESG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을 이사 중 선임하며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위원의 이사 임기까지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③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
제3장 회의

제6조(종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매 반기별 1회씩 개최한다. 단, 필요 시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7조(소집권자 및 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위원장은 회의일 1주일 전까지 개최시기 및 장소를 위원 및 감사에게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.
- ③ 위원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는 소집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9조(결의사항)

위원회에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ESG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
2. ESG경영 중장기 목표의 설정
3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10조(보고사항)

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ESG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
2. ESG경영 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된 사항
3. 외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현황
4.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11조(의견청취 등)

- ① 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·직원이나 외부인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제9조(결의사항) 및 제10조(보고사항)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이나 정기적·비정기적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제12조(이사회 통지 및 보고)

- ① 위원회에서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의한 경우, 위원장은 그 결의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결의 검토 등 ESG경영 관련 활동 내역을 매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 및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 및 감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.

제14조(이사회와의 관계)

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는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 4 장 보 칙

제15조(간사)

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,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위원회 사무 전반을 담당 처리한다.

제16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